

[별표 3] <개정 2018.5.21., 2019.7.1., 2021.7.12.>

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(제12조 관련)

연번	구 분	감면율 (할인율)	비 고
1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	50%	
2	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	50%	
3	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	50%	
4	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	50%	
5	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	50%	
6	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	50%	
7	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	50%	
8	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	50%	
9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와 그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	50%	
10	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)	50%	
11	「노인복지법」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	50%	
12	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 가족	50%	
13	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 가족	50%	
14	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및 방과 후 활동	50%	
15	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참여자	50%	
16	가임기간 여성 할인(만 13세 ~ 55세) (수영장 이용 회원만)	10 %	
17	다자녀(3인 이상) 가족할인	30 %	
18	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	30% 이내	
19	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	50%	

※ 중복 감면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경우만 적용한다.